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9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신설>	○ [별표 1] 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률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회계명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 입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예정지역등 안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차입금 및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그 밖의 수입금
세 출	◦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입지할 우주항공청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관 리	◦ 국토교통부장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법안”이라 함)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²⁾라 함)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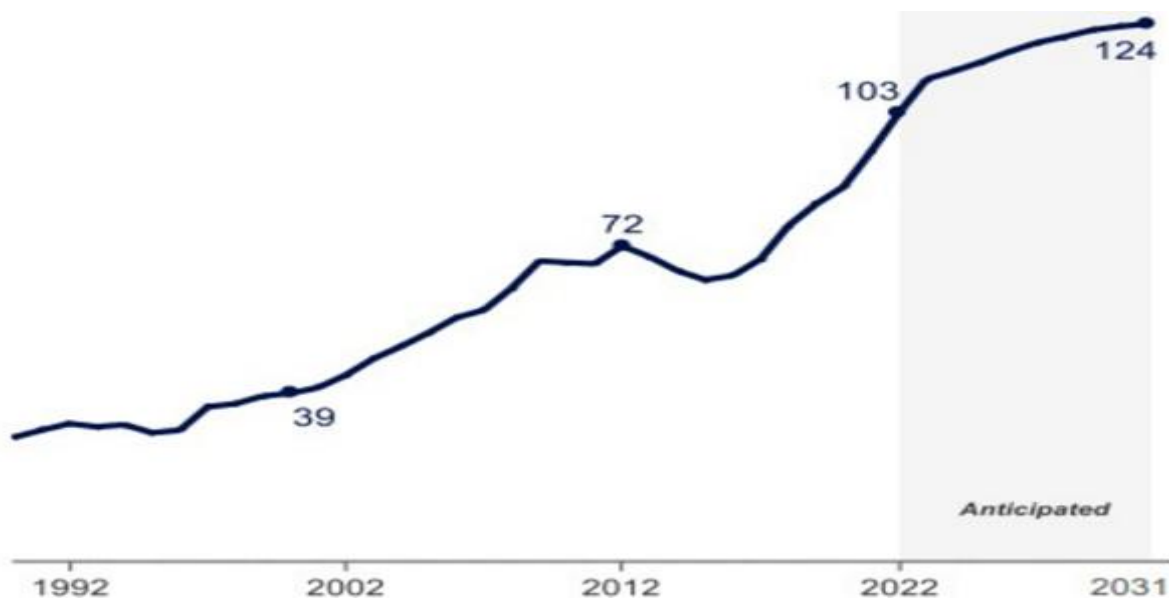
1. “우주항공복합도시”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

건설사업”이라 함)의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글로벌 우주경쟁시대의 개막으로 우주항공 분야는 몇몇 국가만의 활용 영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우주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2000년 약 30개 국가에서 2022년 86개 국가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는 1,030억 달러(약 134조원)로, 2031년에는 약 20% 증가한 1,240억 달러(약 16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³⁾

< 세계 정부의 우주개발 투자 현황 및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uroconsult(2022), Government Space Program

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우주항공청 (이하 “우주항공청”이라 한다)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청사 건설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023.5.12.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2024년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함)을 제정⁴⁾하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한 혁신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 진흥, 우주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를 규정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우주항공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⁵⁾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

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4. 1. 26. 제정, 2024. 5. 27. 시행)

5)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⁶⁾

이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우주경쟁 움직임과 세계 각국의 우주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해 우주 분야 정책 추진을 전담할 컨트론타워인 우주항공청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양성, 산학협력력 촉진,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 가능한 측면은 있어 보임.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 등으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특정세입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재원인 ‘타 회계·기금 전입금, 출연금·차입금’ 등은 특정한 세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법안

6)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우주항공청법의 시행에 따라 ‘우주항공진흥기금’이 설치되어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는 데 실익이 없고⁷⁾,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입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특정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78호, 정부 제출)의 의결을 전제로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79호,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7)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되어도 현행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금을 설치할 수 없는데, 현재 우주항공청법은 현행법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임.

<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법률명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금명	우주항공진흥기금
재 원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 우주항공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 개인·법인 등의 기부금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 도	◦ 우주항공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우주항공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수행 또는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기업, 교육·연구기관 및 우주항공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출자 및 투자·융자 ◦ 우주항공청 추진 사업(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우주자원의 개발·활용 우주항공산업 육성,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및 인재 육성 등) ◦ 정부 융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관 리	◦ 우주항공청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u>2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u>

문의처

02)6788-5152